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9. 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11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2.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】

가. 제안이유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 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투 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O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(안 제3조)
-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내용이며,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O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1조, 제2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.

- O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4조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결 과물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명시함.
- O 검토의견으로는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,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 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